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4

2018-4호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등 5건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등 5건

■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서울특별시의회 '학교보안관' 내년부터 특수학교로 확대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 관련 질의 등 6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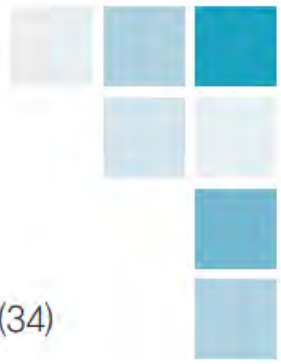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5)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9)
- ▶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11)
- ▶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15)
- ▶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17)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20)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23)
- ▶ 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24)
- ▶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25)
- ▶ 안동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8)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 서울특별시의회 '학교보안관' 내년부터 특수학교로 확대 (32)
- ▶ 부산광역시의회 '건강한 부산 어떻게 만들것인가?' 정책토론회 (34)
- ▶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뒤틀린 역사왜곡 미래세대 주입 (36)
- ▶ 전라북도의회 군산·전북 경제, 특단의 대책 필요 (38)

최근 제·개정 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7)
- ▶ 도지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9)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 관련 질의 (52)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3조 관련 질의 (56)
- ▶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등 관련 질의 (59)
-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관련 질의 (64)
- ▶ 충청남도 당진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관련 질의 (70)
-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질의 (73)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4.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30호, 2018.4.4., 제정]

□ 주요목적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
2. 4차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3. 4차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
4. 4차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5. 그 밖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이의 변경,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9조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2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
2. 4차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그 밖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하거나 4차산업혁명 촉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과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및 4차산업혁명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2. 관계공무원
3. 그 밖에 관계 전문가 · 단체 · 기관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도지사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업무 담당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4. 4차산업혁명 관련 과학 · 기술 · 경제 · 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 안건
4. 위원별 발언 요지
5. 의결 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7.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151호, 2018.4.10., 제정]

□ 주요목적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협동조합”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개별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종료된 후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교협동조합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 협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우선 구매 등)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

3.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자원 조례

[시행 2018.4.11.] [경기도조례 제5893호, 2018.4.11., 제정]

□ 주요목적

경기도 및 시·군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6. “대형상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 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무료 제공 기간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매년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정산 등) ①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 · 취소)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 ·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 ·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 · 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 · 군은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이동조치의 대상기준 및 조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 · 군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 주차장 이용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 · 훼손에 관하여 관리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제13조(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 ① 주차장의 무료 개방 표지설치 비용은 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료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4조(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감독)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4.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8.4.13.] [강원도조례 제4264호, 2018.4.13., 제정]

□ 주요목적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 등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농어촌마을공동체”란 농어촌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추진 한다.

1.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과 농어촌마을의 개성과 다양성을 상호 존중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권리와 책무) ① 농어촌 주민 누구나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급식
2. 공동육아
3. 마을공부방
4. 공동영농, 공동어로
5. 흑한기 및 흑서기의 공동컴퓨터 운영
6. 공동생활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체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참여자명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참여자 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사업 종류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는 지원사업 종류의 선정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5.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4.12.] [울산광역시조례 제1837호, 2018.4.12., 제정]

□ 주요목적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 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사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착한 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착한 가격업소 관련한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착한 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포상)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 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 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 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 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현황 모니터링 등) ①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매월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로서 모니터링요원을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모니터링 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고할 수 있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4.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786호, 2018.4.2., 제정]

□ 주요목적

수원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수원시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원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이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는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담당 공무원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 또는 해당업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음식 및 관광문화 활성화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음식문화거리 상인회 대표
 3. 외식조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외식업 지부장
 5. 소비자 관련 시민사회 단체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시행 2018.4.3.]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074호, 2018.4.3., 제정]

□ 주요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접종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기준) 무료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2회(생후 2·4개월) 또는 3회(생후 2·4·6개월)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무료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 신청서를 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무료접종을 받는다.

제5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무료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시행 2018.4.6.]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438호, 2018.4.6., 제정]

□ 주요목적

단양군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양군내 농어업·농어촌 및 농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고·검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4.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시행 2018.4.11.]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334호, 2018.4.11., 제정]

□ 주요목적

합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비자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범죄행위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해 범죄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
3. 거주민의 집 앞 가꾸기 등으로 사유공간 개념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침범을 어렵게 한다.
4. 공공장소의 적절한 배치로 군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인근지역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한 장소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비자들의 범행욕구를 조기 차단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합천교육지원청, 합천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5. 안동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4.18.]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347호, 2018.4.18., 제정]

□ 주요목적

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9.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3조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5조(영업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사용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특별시의회

방배초 논란 겪은 ‘학교보안관’ 내년부터 특수학교로 확대된다

서울시의 ‘학교보안관’ 제도가 내년부터 국공립 특수학교로 확대된다. 최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질극에서 학교보안관은 일부 근무지침을 어겼음에도 경찰에 최초신고를 하는 등 초동대처를 제대로 해 큰 피해를 막았다.

9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정돼 있는 학교보안관의 운영 대상에 서울 국공립 특수학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라는 게 의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석(도봉) 시의원은 “특수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합해 하나의 시설로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조례 운영대상에 빠져있었다”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포함되는 특수학교는 서울 내 특수학교 중 국공립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11개교다. 예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3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특수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배움터지킴이가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배움터지킴이 신분은 계약에 의한 고용 관계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일당도 4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보안관의 한 달 월급 164만 7,000원과 큰 차이가 있어 업무에 대한 열의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과 교내 안전 강화 목적을 위해 도입했다. 2010년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로 들어가 당시 8살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수철 사건이 계기가 됐다. 서울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에 근무 중인 학교 보안관은 1,100여명이다.

학교보안관 운영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방배초 인질 사건에서 드러난 단점들을 메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보안관은 2명이 각각 오전 7시30분~오후 4시, 낮 12시30분~오후 9시로 나눠서 근무한다. 하루 약 3시간을 제외하면 주로 1명이 모든 교내 안전 강화 업무를 떠맡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교내 주차관리를 하는 등 잡무에 동원되는 일도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보안관의 근무가능연령을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근무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면서 “현재 시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을 만들었고, ‘미스터리 쇼퍼단’처럼 학교를 갑자기 방문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한 부산 어떻게 만들것인가? 건강도시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진수)는 2018. 4. 13(금) 오후 2시 부산의료원 6층 대강당에서 “건강한 부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건강도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부산시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은 토론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민의 삶 속에서 행복 부산의 길을 찾다’를 모토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 건강, 환경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에도 10차례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공공의료지원단,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이진수 위원장(자유한국당, 동래구3)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황인경 부산의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마을건강센터와 소외계층 의료안전망 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 ‘공공-민간병원 협력운영 개선방안’과 ‘건강도시 부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 인사말씀(이진수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주제발표 및 토론,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건강도시사업지원단 김창훈 단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최재우 팀장, 부산의료원 김형수 부장이 각각「소생활권 주민건강과 마을건강센터」,「부산시 소외계층의 건강과 의료안전망」 그리고, 「부산시민의 건강과 공공-민간협력(3for1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부산의과대학교 황인경 교수를 좌장으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사상구 이소라 보건소장, 이주민과 함께 이한숙 소장, 부산시 보건위생과 성태봉 팀장,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류강렬 단장 등 5명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수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지난 4년 건강도시 부산 대표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진단하고, 더 나은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한 미래 지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며,

“최근 부산시는 건강형평성 문제와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실태 조사에서 전국 최하위 도시로서 평가받고 있다. 건강형평성 및 소외계층 진료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부산시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전문가도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 개최할 토론회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일본의 뒤틀린 역사왜곡 미래세대 주입, 강력 경고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고우현)는 30일 우리 땅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킨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고시된 것과 관련, 일본의 제국주의적 발상과 끊임없는 역사왜곡을 강력 규탄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 300만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는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섬나라 일본은 지난해 3월 31일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는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데 이어, 불과 1년 만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도요령을 확정고시 함으로써 또 다시 역사왜곡을 자행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어처구니없는 망동에 대해 반성은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일본의 소아(小兒)적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고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는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고교학습지도요령을 즉각 폐기하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과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과 우호관계를 앞당기는 길이며, 끊임없는 도발과 과거에 대한 외면은 결국 망국의 지름길임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진지한 반성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남진복 위원장은 “날로 노골화되고 극악해져 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침탈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독도 정주기반시설 조성 및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접근성 개선, 울릉도·독도의 해양수산 발전방안과 민간차원의 홍보강화 등 획기적인 조치들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이번에 발표한 고교학습지도요령은 과거 고교학습지도 해설서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으며,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고 이를 새로 개편된 역사·지리 총합과목과 공공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어린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주입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군산·전북 경제, 특단의 대책 필요

- 특정 산업분야 의존해 온 지역경제 적극적·선제적 대응 필요
- 수상태양광 발전 방안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책 마련 절실

경제위기 여파가 실질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 군산과 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상태양광 발전 방안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울러, 그동안 특정 산업분야에 의존해 온 지역경제를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6일, 제352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위기를 넘어 파탄지경에 이른 군산과 전북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GM 군산공장 등에 대한 제언과 수상태양광발전 그리고 민생안정지원책에 대한 제언을 한 것.

최근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도내 취업자 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영향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1만 9,700여 명이 감소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이 오는 5월 폐쇄되면, 올 상반기 군산시 실직자 수가 무려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휴업하거나 폐업한 업체 수는 지난해 하반기 898개로 지난 2015년 대비 74.4%나 증가, 지난 3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내 총생산은 지난 2011년 대비 17.2%가 하락했다.

최인정 의원은 “그동안 수없이 지역경제 위기 경고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허공의 메아리’처럼, 군산시민과 해당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전혀 없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5일 정부가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돼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보조·융자·출연 등의 자금지원,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희망의 목소리를 냈다.

최인정 의원은 “정부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확대와 직업훈련, 전직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 고용유지 지원금 우선 배정,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기업 대상 법인세와 소득세 5년간 전액감면 등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특히,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세제지원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 정책이 지역경제 특정 산업분야인 한국GM 군산공장이나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재가동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최인정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재무회계를 감사하고, 한국GM 군산공장은 산업은행이 철저한 실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두 공장의 고용 유지는 지원이 아닌 투자라는 것으로, 공장의 재가동만이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것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은 매각과 인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

특히, 그는 전북도에 한국GM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위해 사내하청 금지 조항을 어긴 공장을 노동지청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새만금에서 해상풍력 산업이 기틀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과 도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새만금 공유수면 등에 수상태양광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경제에도 큰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상태양광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속적인 수익창출 전략으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인정 의원은 “이는 GM공장 퇴직자들과 군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직자들의 경우 퇴직상여금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수상태양광사업에 투자한다면, 안정적 수익창출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해수면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실업자와 소상공인 등 군산시민으로 구성된 조합이 전북개발공사 또는 민간기업과 합자해 수상태양광을 개발이 된다는 가정에서다.

최인정 의원은 “개인당 1억원의 투자로 1억5천만원의 PF자금을 저리로 대출·투자할 경우, 이자와 원금을 20년 만기로 상환한다는 계획아래 최하 월 150만원의 수익창출이 보장된다”면서 “이는 현재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산시민들에게도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경기활성화와 얼어붙은 내수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인정 의원은 “이를 위해 도는 관련 사업과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조해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와도 협력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도 수상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경제에 지속적 수익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GM 군산공장은 5년 후 폐쇄조건으로 재가동해야 하고 5년동안 매각과 인수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4.17.] [대통령령 제28803호, 2018.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농산물의 비축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 대상 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방법을 정하여 위탁하도록 하여 비축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상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방법

제3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回避)하여야 하고,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를 각각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6까지로 하고,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위원의 해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4.17.] [대통령령 제28806호, 2018.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부속시설의 설치 등 부수사업의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주대책 수립·실시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부수사업에 따른 이주정착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실시 대상이 아닌 부수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원인이 되는 주된 공익사업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1조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사업인정신청서”를 “사업인정신청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인가·승인 등 신청서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이 되는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

· 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
자가 부담한다.

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주된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요청을 받
은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4.17.] [법률 제15612호, 2018.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3년”을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률 제1501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4.17.] [법률 제15601호, 2018.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진 등 예측이 곤란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재난복구 시스템은 주택 및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긴급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재난발생 지역의 주민들이 긴급복구 이후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긴급복구 외에도 재해 취약요인의 분석과 동일 재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병행하여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근본적 도시재생이 필요함.

다만, 현행은 인구감소, 산업시설 감소 등 쇠퇴한 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절차 및 내용만을 정하고 있어, 재난발생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더해, 재난지역 주민들의 주거지와 일터를 재건하고, 복합적 토지이용, 지역 특화산업 육성, 관광·문화 등 도시 명소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활력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난지역의 재생을 위한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 지역을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로 복원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 주택, 기반시설이 파손되어 정비 및 신규공급이 필요하고 추가적 재난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신설).

나.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특별재생지역에서 주택·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대책, 지역거점 육성 대책,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포함하는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신설).

다. 재난피해 지역에서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라. 재난피해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4.17.] [법률 제15590호, 2018.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일반 국민의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바, 현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을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될 수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성매매 예방교육의 업무 수행 및 위탁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기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그 조례의 부칙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때부터 근무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등 관련)

[의견18-0023, 2018.3.23., 광주광역시교육청]

【질의요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기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그 조례의 부칙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때부터 근무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 개정 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별표에 추가하면서 그 조례의 부칙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때부터 근무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법재량 범위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부과될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시어 합리적인 기준 시점을 설정하여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개정안 별표에서는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소재하는 지역을 “라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새로 설립된 후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기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의 부칙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때부터

근무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개정 되는 것이나, 오히려 대상자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인정되고, 그러한 소급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 결정,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0헌바69 결정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그 설립 시부터 근무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조례 개정 시 부칙에서 신설 기관인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하여는 설립 당시인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개정 전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 이익을 줄 뿐이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손실을 주지 않는 시혜적 소급입법으로서,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 개정 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별표에 추가하면서 그 조례의 부칙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때부터 근무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법재량 범위에

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부과될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시어 합리적인 기준 시점을 설정하여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의류수거함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3조 관련)

[의견18-0041, 2018.3.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질의요지】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의류수거함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하 “강북구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8조제3항에서는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

1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부훈령 제1269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하 “분리수거지침”이라 함) 별표 1 제3호다목에서는 의류 및 원단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하도록 배출요령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강북구조례안에서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의류수거함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강북구가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자원재활용법 제13조제1항 및 분리수거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류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분리수거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리수거지침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르면 구청장이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자목에서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운영·관리와 관련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강북구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원재활용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류의 재활용을 위한 의류수거함의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강북구조례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와 같이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운영·관리자에게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의무 등 준수사항을 곧바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강북구조례안 제6조 및 제8조의 취지가 구청장이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 자에게 의류수거함의 운영·관리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면서, 구청장이 정하는 운영·관리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의류수거함의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제8조와 같은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강북구조례안에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위탁·대행을 위한 계약 체결시 그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의류수거함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해설시간·근무일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등 관련)

[의견18-0031, 2018.3.30.,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질의요지】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해설시간·근무일수를 정하면서 예산 또는 근무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해설시간·근무일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해설시간·근무일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48조의4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무주군조례

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매월 근무일수를 규정하면서 예산 또는 근무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무주군조례안 제7조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해설시간·근무일수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등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해설시간·근무일수에 관한 사무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라고 보이므로,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무주군조례안에서와 같이 규정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소관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의4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면 장은 이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인 동시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고 활용하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8. 24. 회신, 의견 12-0259 참조).

다음으로, 무주군조례안 제7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해설시간·근무일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광진흥법」제48조의4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해설시간·근무일수와 관련하여 같은 지침 제10조제1항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월간 및 연간 최소 활동일수만 규정하고 있는데, 무주군조례안 제7조제4항에서는 월간 최대 활동일수와 관련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15일 이내로 하되, 현지 근무여건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주군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1항)하는 한편,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항),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제4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5항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결정시 역량, 활동실적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

간·해설시간·근무일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무주군조례안 제7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해설시간·근무일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어느 한쪽의 고유권한을 다른 쪽이 행사하게 하거나 사전적·적극적으로 그 권한에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해설시간·근무일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주군조례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제1항),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제2항),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15일 이내로 하되, 현지 근무여건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4항)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관광객 수요 또는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무주군조례안 제7조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해설시간·근무일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등 관련)

[의견18-0086, 2018.4.09., 세종특별자치시]

【질의요지】

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사 증·개축 시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을 밀폐된 구조가 아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축사 신축 시 해당 가축사육 제한 범위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사 증·개축 시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을 밀폐된 구조가 아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축사 신축 시 해당 가축사육 제한 범위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공통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 3호에서는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제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제4호),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 제1조에서는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구역은 하천기획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세종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가축분뇨법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에서는 「하천법」 제10조 적용지역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고,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신축 시 해당 가축사육 제한범위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로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제1호), 해당 부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규모 이하로 개축하는 경우(제2호),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을 밀폐된 구조가 아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하천구역 주변지역(이하 “하천구역 주변지역”이라 함)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제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제4호) 등 중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하천구역 주변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가능 구역으로 규정하려면 이러한 지역 중에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하천구역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이거나,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수도법」 제7조의 취지 및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가축분뇨법 제8조제2호)이라고 판단하거나, 하천구역 주변지역이 수변구역(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세종시조례안에서 가축사육 제한 가능 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천구역 주변지역의 일부라도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하천구역 주변지역을 일괄적으로 가축사육 제한 가능 구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맞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세종시조례안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세종시조례안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사 증·개축 시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을 밀폐된 구조가 아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축사 신축 시 해당 가축사육 제한 범위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조)”고 할 것이고,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 보존 등을 위하여 조례로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기존 축사에 대한 증·개축 등을 허용할지 여부와, 허용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그 요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00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7. 24. 회신 15-0139 의견 참조)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종시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로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증·개축이 허용되는 경우에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을 밀폐된 구조가 아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신축 시 해당 가축사육 제한 범위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조례안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사 증·개축 시 악취 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을 밀폐된 구조가 아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축사 신축 시 해당 가축사육 제한 범위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컨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관련)

[의견18-0041, 2018.4.10., 충청남도 당진시]

【질의요지】

당진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컨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당진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당진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당진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당진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당진시장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당진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당진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제1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제2호), 지역사회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 운영(제3호), 다양한 교육컨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제4호), 지역교육인프라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제5호), 학부모, 각 분야 전문가 등의 교육기부를 통한 교육활동 지원체계 구축(제6호),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당진시조례안 제2조에 따라 설치되어 같은 조례안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당진시조례안 제2조에 따라 설치하여 같은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컨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당진시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같은 항 각 호와 같되,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같은 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의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진시조례안에 같은 조례안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

차·운영에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진시조례안 제3조에 따른 행복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이 교육자치법 제20조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와 중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당진시조례안 제1조에서 같은 조례안의 목적을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같은 조례안 제3조 제3호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지역사회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교육자치법 제20조제11호의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과 중복될 소지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진시조례안 제3조제4호에 따른 “교육컨텐츠” 개발은 같은 조례안 제1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컨텐츠 개발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교육자치법 제20조제6호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진시조례안 제3조제7호의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 규정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교육자치법 제20조 각 호의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일반적인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자치법에서 시·도의 사무로서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한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당진시조례안 제3조에 따른 행복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여 그 기능이 교육자치법 제20조 각 호의 규정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진시 관할 구역의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여 당진시조례안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진시조례안 입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의견18-0067, 2018.4.10.,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질의요지】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지?

【의견】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3호) 등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청주시조례”라 함) 제39조에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제7호),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청주시장은 청주시의 일반재산이 청주시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을 반드시 매각하여야만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제2호),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42조 또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제1호),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제2호),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반 재산을 매각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관리 주체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청주시장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등 해당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을 판단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법령상 매도 제한이 없는 경우라도 일반재산의 매각 여부에 관해서는 관리권자가 결정할 사항이지 매입희망자의 신청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주시조례 제39조에서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의미는 매각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규정이 아니라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 일반계약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8년 4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